

## 論文

# 電気通信政策과 電波管理의 發展方向\*

正会員 王 志 均\*\*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Radio Administration in Korea

Jee Kyoong WANG\*\*, Regular Member

**要約** 遷信部에서 直接 経営하는 公衆電氣通信事業은 1982년 1月1日을 期하여 韓国電氣通信公社가 專担하게 됨에 따라, 遷信部의 行政組織은 華新的으로 改定되리라 한다. 此際에, 通信科學을 專攻하는 立場에서 우리 나라 遷信行政의 核心이 될 電氣通信政策과 電波監理의 發展을 위하여 가장 重要한 組織創造와 人事改革의 兩側面을 積極究論함으로써 그의 方向을 提示하였다. 이 比較研究로서는, 公衆電氣通信事業을 日本電信電話公社에 依한 営業과 郵政省에 의한 監理로써 模範의 으로 進行하고 있는 日本国의 事例를 摂하였으며, 國内外의 関係文獻과 最新의 資料에 의하여 考察하였다.

**ABSTRACT** The organization of Ministry of communications shall be remarkably re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inauguration of Korea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 which will operate independently from the Ministry, starting from on the 1st of January, 1982. On this occasion, I, as one of communication scientists, would like to recommend som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Radio Administration which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departments of Korea, particularly confined to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ersonnel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With a view to make a comparative perspective, I took the model of Japanese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because of its efficient performance by way of coordinating between business side of Corporation (N.T.T.) and regulatory side of the 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 This study is mainly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books and documents.

### 1. 머리말 : 問題의 提起

우리는 待望의 80年代를 맞이하였으며 希望한 第五共和國의 進軍도 開始되었다. 새로운 趕進을 위한 적지 않은 改革이 進行되고 있는 바, 우리 国家의 中央行政組織에 对한 改正事業과 그 中의 하사로서期待되고 있다.

報道에 의하면, 政府의 모든 機構이 縮小되고 公務員도 減量될 것이라고 한다. 特히, 遷信部는 電氣通信公社가 82年 1月 1日 發足되므로 交遷部에 들어

가게 되든지, 심지어는 不必要하게 될 것이라는 極言마저 있다!

行政의 民主化 및 能率化를 위하여 行政組織이 改革되는 것은 發展行政으로서 贊揚될 일이지만, 不合理的縮小·減員의 斷行은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事前에 充分한 檢討가 慎重히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最近의 자못 具體的인 報道에 의하면, 遷信部의 中央機構로서 計劃局·電務局 및 保全局은 疾出되고 電

\*1981年度 韓國通信学会 第5次 秋季學術講演會(1981年 10月 23日)의 發表論文

\*\*光云工科大学 電子通信工学科

Dept. of Telecommunication

Kwang Woon University, Seoul, 132 Korea

論文番号: 81-1 (接受 1981. 9. 25)

1) 中央日報(1981. 8. 22)記事: “行政기구 縮小개편”, 체신부에서 전신전화公社가 떨어져 나가고 교통부에서 철도공사가 떨어져 나가면 2部를 합쳐 交遷部로 만들고,

서울신문(1981. 8. 14)記事: “政府 기구 축소, 高位職 감축”, 전기통신공사가 생길 경우 체신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음.

氣通信政策局을 新設하여, 郵政局에서 떠나오니 搢對替業務를 따로 떠여 專擔하는 搢對替局을 新設 및 外局이던 電波管理局을 内局으로 하려라 한다?

1980年 本 學會 秋季學術發表會議에서 答者는 「遞信部의 中央機構로서 電氣通信政策局의 新設이 바람직하며 電波管理局을 格上強化되어야 하니라고 發表한 바 있다.<sup>3)</sup>

此際에, 上記 電氣通信政策局에 關하여 그의 發展方向을 提示할 立場에 있다고 答者は 自認하며, 이우리 아직도 実現의 曙光이 비치지 않은듯한 電波監理行政의 強化 發展을 다시 한번 補論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릇, 通信은 人体內의 神經體系(nervous system)에 比喻되므로 社會의 通信網은 國家의 動脈에 該當하며 国民은 通信없이는 現代社會生活을 常為할 수 없게 되었다.<sup>4)</sup>

이와같이 重要한 通信에 對한 우리 國家行政을 二大別하면, 郵便·電話·電信 等을 管理하는 遷信部의 行政과 新聞·〈라디오〉·TV等을 管掌하는 文化公報部의 行政이 된다.

따라서, 政府機構縮小가 大命題라고 한다면, 通信行政이라는 大原則에서 우리 나라 通信의 總本山인 遷信部에 文公部의 上記 〈폐지案〉部面을 果敢히 統合하는 試案도 나올 법하다. 事實, 外國에서는 電子新聞(Electronic Press)이라 하여 家庭用 〈폐지案〉로서 電送되는 新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다.<sup>5)</sup>

이와같이 通信의 〈미디어〉는 驚嘆스럽게 發展되며, 通信衛星을 經由한 電子郵便(Electronic Mail), Computer를 利用한 データ通信, 〈디지털〉高速出像通信等에 의하여 徒來의 電信·電話라는 概念은 革新되었으니, 이를 管理하는 遷信部의 機構는 応當 改定되어야 할 時點에 이르렀다. 이를 或者는 T & T에

서始作하여 C & C를 거쳐 D & D의 時代로 向하는 것이라고 謂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이 時代의 變遷과 어려 電氣通信 〈미디어〉에 關한 情報의 調査·分析·研究·活用 等의 政策遂行 機構로서 電氣通信政策局의 実現이 우리 遷信部에 oun 新設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便, 電氣通信에 關하여는 國際間의 緊密한 協力이 必然的이므로 1865年 5月 17日 人類 最初의 國際協力機構로서 万國電信聯合이 成立되었거니와<sup>7)</sup>, 이는 오늘 날의 國際電氣通信聯合(I.T.U.)으로서 우리 나라도 1952年 1月 31日 に加入한 바 있다.<sup>8)</sup>

電氣通信의 〈미디어〉中에서도 電波는 그가 其の迅速性과 国境을 超越하는 广播性으로 因하여 가장 國際性이 높은편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对外通信은 거의 全部를 電波 〈미디어〉에 의하고 있으므로<sup>9)</sup> 이 電波에 대한 行政은 우리 通信行政中에서는 最優先視 되어야 할 部門이다. 豈만아니라 電波手段으로써 南侵唯을 노리고 있는 北匪가 I.T.U.에도 加入하여 間接侵略을 慢行하고 있으므로 國家安保上의 見地에서도 遷信部의 電波行政은 強化 对備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電氣通信政策과 電波管理의 二部門은 遷信行政中에 代表적 核心의 機構로서 가장 研究되어야 할 價値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近來, 行政의 價値 提高를 위하여 行政의 民主化 및 行政의 能率化가 高唱되고 있는 바, 故密화 이ふ 究明화나마 行政의 民主化는 目的價値이고 行政의 能率化는 手段價値이며 分明하여 이 目的價値은 手段價値外에一致성이 理想의である 하겠다. 이 行政의 能率化 実現을 위해서는 滿足 方法이 있었지만, 比較行政論<sup>10)</sup>의 追求方法이 가장 科学的일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中進國인 우리 나라에 서는 遷信部의 組織改

3) 1980年 10月 24日 韓國通信学会 主催 學術세미나, 王志均 發表, “通信主管官署行政組織에 对한合理化 方案”, 韓國通信學會誌 第5卷, pp. 17~25.

4) 三浦一郎, 通信政策の課題と展望, 第一法規出版株式会社, 東京, 1974, p. 3.

5) 國際通信電話, 國際通信文化研究社, 東京, 1981年 1号, p. 27, “電子新聞”

6) 서울신문(1980. 6. 18)記事: “英國에 衛星배포부, 1隻에 加로 2천 電送.”

國際通信電話: 前掲書, 1977年 6号, p. 35, 1970年に 米国で誕生した 電子郵便は 1977年には 取扱通数 約 2,500万數に 達する.

7) 柏木輝彦, “電氣通信, 過去·未來”, 國際電信電話, 前掲書, 1981年 4月号, pp. 18~19. 電氣通信 次に来るものは T & T(電信·電話) から, C & C(コンピュータ·オーディオ·データ)를 거쳐 D & D(DDX + Database)의 時代である.

8) 朴觀淑, 新版 國際法, 法文社, 1956, p. 21, 万國電信聯合 (Universal Telegraphic Union)

9) 遷信部, 電氣通信八十年史, 1966, 附錄, pp. 813~814

10) 白榮大, 王志均: 世界通信交通地理, 電波科学社, 1978, 附錄, pp. 5~92

11) E. HEADY, 徐元宇 訳, 比較行政論, 法文社, 1976, 附錄, pp. 15~64

革에 앞서서 必히 先進國의 当該 行政先例를 比較考察함이 順序이며 有益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接近方法은 文獻과 事例의 研究方法에 의한 比較分析을 取하되, 다만 世界의 最先進國인 美國과 東洋의 先進國인 日本国의 当該 行政事例를 標本으로서 調査코자 한다.

美國에 있어서는 公衆電氣通信事業은 完全한 民營이고, 이의 規制도 委員會制<sup>12</sup>에 의하고 있으므로 이제 사電氣通信公社를 始作코자 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또 未來의 指標라고나 할 수밖에 없다. 이에 反하여 日本国은 1952年 8月 1日 電信電話公社(N.T.T.)를 發足시켰고 郵政省에서 이를 監理하여 오고 있으므로<sup>13</sup> 우리에게는 가장 適切한 比較行政이라고 하여야 되겠다.

이제, 우리 나라의 遞信行政中 電氣通信과 電波管理의 發展 方向에 관하여 日本의 行政先例를 比較資料로 삼아 가장 接近된 建設의 代案을 提論코자 한다.

이 小見이, 우리 나라 通信行政의 發展促求를 위한 善与가 있기를 期待한다.

## 2. 電氣通信政策의 發展方向

### 1. 電氣通信政策의 意義

#### (1) 電氣通信의 意義

電氣通信의 定義에 関하여는 電氣通信法에도 明示되어 있으나<sup>14</sup> 条約優先主義<sup>15</sup>에 따라 國際電氣通信協約 附屬無線通信規則에서의 規定을 確認하면 다음과 같다.

Tele-communication; Any transmission and emission or reception of signs, signals, writing, images and sounds or intelligence of any nature by wire, radio, optical or other electro-magnetic systems<sup>16</sup>

日本 市橋良治氏는 이를 다음과 같이 分析 說明하고 있다. 즉, 「電氣通信이란,

#### (1) 方法…有線·無線·光線 等의 他의 電磁的方式

12) Rules and Reugulation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U.S.A.

13) 株式会社 教育社, 便覽 郵政省, 1979, 東京, p. 21

14) 電氣通信法 第2条 第1号: 電氣通信 — 有線·無線·光線 및 其他의 電磁的方式에 의하여 모든 種類의 符号·文書·音聲 또는 影像을 送信하거나 受信하는 것.

15) 電氣通信法 第11条(國際電氣通信業務)

16) Radio Regulations annexed to the I. T. C, 1979, Geneva, by I.

에 의하여

② 目的物…모든 種類의 記号·信号·文書·影像·音聲 또는 情報을

③ 行為…伝送하고, 發射하며 또는 受信하는 것이다.<sup>17</sup>

或者는 이를 다시 附会하여 上記中 ①方法을 媒体, ②目的物을 客体, ③行為를 主体(人間)이라고 解釈하고 더 나아가 이를 基礎理論으로 하여 遞信部은 電氣通信部로呼称한 後 ①方法 → 電氣通信技術局, ②客体 → 電氣通信情報局 및 ③行為 → 電氣通信運用局으로 하여 理想의이라는 意見도 있는 바, 歷史的事実로서 日本에서는 「電氣通信省」이라는 先例도 있었으므로 「理 있는 該局 改革案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2) 政策의 意義

政策이라는 낱말의 定義에 관하여는 몇 가지 學說이 있으나, 政策學의 觀點에서 “政策이란 当為性(Desirability; Ought-to)에 立脚한 社會價值體系(Social Value System)의 变化를 通해서 形成되는 行動志向의企圖이다”라고 함이<sup>18</sup> 가장 適正한 것 같다.

政策科學에서는 政策을 「政府·社會組織·企業·個人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目標의樹立, 達成, 評価, 再樹立의 全過程에서 最小의 資源으로 最大의 結果를 予見할 수 있는 代案策을 選擇하는 行為이다」라고 보고 있다.<sup>19</sup>

政策學이건 政策科學이건 問에, 政策에 관하여는 그 樹立의 過程(Process Analysis) 보다는 政策의 效果面(Impact Analysis)에 더 研究의 方向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라스웰〉(LASSWELL)은 政策效果의 分析을 社會發展의 道具役割임을 強調하고 있는 바, 그의 政策決定의 方法와 模型은 다음 〈表-1〉과 같다.<sup>20</sup>

#### (3) 電氣通信政策의 意義

通信政策論에는 그 内容으로부터 세 가지의 方向이 있다는 見解가 있다. 첫째, UNESCO通信政策論,

T. U. 1-1

17) 市橋良治, 國際電氣通信條約講義, 電氣通信協會, 1959, 東京, pp. 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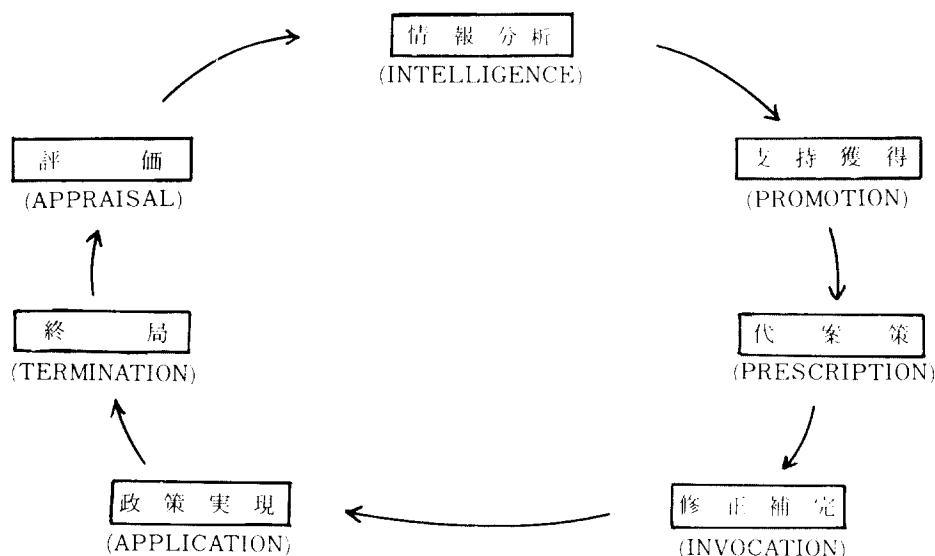
18) 株式会社 教育社, 便覽 郵政省, 前掲書, p. 132, 遞信省의 分割(郵政省と 電氣通信省, 1946年 6月)

19) 前註 外 5人, 政策學概論, 法文社, 서울, 1980, p. 39

20) 崔平吉, 韓國의 政策科學, 延世大學校, 1981, p. 1

21) 崔平吉, 前掲書, p. 13

〈表1〉 LASSWELL의 政策決定의 段階圖



\* 資料 : (HAROLD D. LASSWELL,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둘째, EUROPE型 通信政策論 세째, 美国型 通信政策論이 그것이다.<sup>22)</sup>

通信技術의 進歩, 各〈미디어〉의 役割·技能·重要性의 变化 等으로 因하여, 通信〈미디어〉에 関한 法律·政策의 檢討 等에 主要 関心을 帶고 있는 것이 바로 美国型 通信政策論이다.

따라서, 電氣通信政策이란 上記中의 第三番即 美国型 通信政策論에 屬類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COMMUNICATIONS POLICY(미디어政策論)이나 COMMUNICATION POLICY(抽象的인 政策論)가 아님 TELECOMMUNICATIONS POLICY(電氣通信〈미디어〉政策)인 것이다.

## 2. 電氣通信政策局의 進路

### (1) 電氣通信政策機構의 來歴

政府의 中央機構로서 電氣通信政策을 执掌한 機関이 첫 登場한 것은, 1968年 12月 7日 提出된 〈某在任中 우〉 教授의 研究報告書에 따라 美国 大統領府 内에 Office of Tel-communications Policy(O.T.P.)가 新設된 것이 先駆이다.<sup>23)</sup> 그러나 当時의 大統領이었던

JHONSON氏와 NIXON氏를 交替되자 곧 이 機構는 商務省으로 移管되었는 데, 아마도 이는 通信을 通信機器 裝置產業으로서 솔직히 处理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그 뒤 次に 起こった Watergate 事件으로 因하여 〈타운〉大統領의 失脚을 가져온 通信秘密侵害事故는 이 機構가 大統領府 複元을 아뢰게 하는 것이다.

日本国内은 1970年 6月 15日 郵政大臣 官房室에 通信政策課를 新設하여 그 밖에 調査係·企劃係·外國調査係·情報産業調査室 및 政策企劃官室을 두었는데, 이 課의 任務는 技術革新에 의한 通信〈미디어〉의 多樣化·情報化의 進展 等에 對処하기 위하여, 通信行政 全般에 關한 基本的 政策의 企劃, 이에 必要한 調査 및 研究에 關한 事務를 司掌하는 것이다.<sup>24)</sup>

特に 注意해야 할 것은, 이 通信政策課는 1980年 7月 1日 電氣通信監理官室을 合併하여 通信政策局으로 格上げ된 規模을 拓大한 事實이다. 이 機構는 〈表-2〉와 같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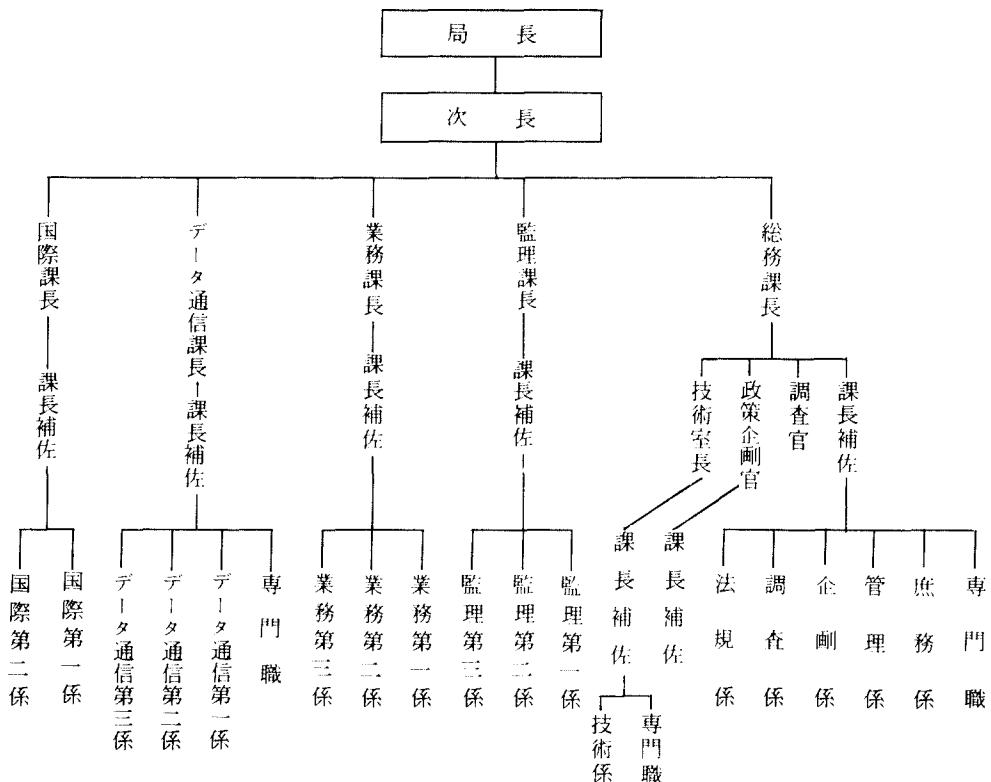
22) 電波時報, 電波振興会, 1980年 5月号, ニュースと ニューワニケーション, 東京, p.2

23) 三浦一郎, 前掲書, PP. 94~95

24) 株式会社 教育社, “便覧 郵政省”, 前掲書, p.26

25) 日本 郵政省組織令 及 日本 郵政省組織規程

(表2) 日本電気通信政策局機構図



※ 資料：電波時報，1980年 No.6 (P.37)

## (2) 電気通信政策局의 任务外組織

日本郵政省設置法을参考로 하여, 우리 나라 電信部에 新설되어야 할 電気通信政策局의 任务는 私案으로서 提示한다. 아울러 日本郵政省組織令 및 同規程에 規定된 日本電気通信政策局內의 組织과 각 任务를 調査하여 報告한다.

## 1) 電気通信政策局의 任务(案)

電気通信政策局은 다음 事務를 掌理한다. 다만, 電波管理局의 所掌事項은 除外한다.

- ① 電気通信의 規律에 관한 政策의企劃·立案 및 推進에 관한 일
- ② 電気通信을 規律하고 監督하는 일
- ③ 國際電気通信의 管理에 관한 國際的 締約와 商議와 締結 및 國際電気通信聯合와 其他 機関과의 連絡에 관한 일
- ④ 通信保安에 관하여 規律하고 監理하는 일
- ⑤ 國家非常時に 대비하여 電気通信의 体制 및

## 運用을 講究하고 訓練하는 일

- ⑥ 韓國電気通信公社 및 電信部傘下 団体를 監理하는 일
- ⑦ 公共企業体等 労動委員會에 대한 調停 및 仲裁의請求에 관한 일(韓國電気通信公社에 限함)
- ⑧ 電気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法令을立案하고, 이를 実施하는 일
- ⑨ 電気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事務取扱方法을 制定하고, 이를 実施하는 일
- ⑩ 電気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研究 및 調査 또는 이를 部外의 研究 機関에 委託하는 일
- ⑪ 所부의 職員의 需要 및 採用에 관한 計劃案을 作成하는 일
- ⑫ 所부의 職員을 訓練하는 일
- ⑬ 電気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予算案을

- 準備하고, 成立予算에 基한 業務計劃을 実施하는 일
- (14)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弘報를 行하고, 統計를 作成하는 일
- (15) 前各号에 揭記한 일 以外에, 電氣通信에 관하여 遞信部의 権限으로서 法令이 定하는事項을 处理하는 일
- (16) 前各号의 事務에 附帶하는 일
- 2) 日本国의 電氣通信政策局의 職務表
- (가) 總務課
- (1)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하여 總合調整을 行하는 일
  - (2) 電氣通信의 規律에 관한 基本的인 政策의企劃, 立案 및 推進에 관한 일
  - (3) 有線電氣通信法의 施行에 관한 일
  - (4) 公衆電氣通信法의 施行에 관한 일
  - (5)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中, 電氣通信에 關係되는 技術的事項에 관한 事務를 決定하는 일
  - (6)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研究 및 調査에 관한 管理를 하는 일
  - (7)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事務取扱方法을 制定하는 일
  - (8) 所部職員의 需要 및 採用에 관한 計劃案을 作成하는 일
  - (9) 所部職員을 訓練하는 일
  - (10)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予算案을 準備하고, 成立予算에 관한 業務計劃을 作成하는 일
  - (11)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周知를 行하고, 統計를 作成하는 일
  - (12)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로서 他課에 屬하지 않는 일
- (나) 監理課
- (1) 電信電話公社 및 國際電信電話株式会社의 監督 및 이에 관한 法令의 立案에 관한 일
  - (2) 電信電話設備의 拡充을 위한 暫定措置에 관한 債券의 發行條件 等의 決定을 하는 일
  - (3) 電信電話公社 共濟組合에 관한 일
  - (4) 公共企業体等 労動委員會에 对한 調停及仲裁의請求에 관한 일(N.T.T에 限함)
- (다) 業務課
- (1) 公衆電氣通信法의 施行에 관한 일
  - (2) 電信電話設備의 拡充을 위한 暫定措置에 관

- 한 法律의 施行에 관한 일
- (3) 有線放送電話에 관한 法律의 施行에 관한 일
- (4) 公衆電氣通信業務의 規律 및 監督에 관한 研究 및 調査를 行하는 일
- (5) 前各号에 揭記한 以外에, 公衆電氣通信業務의 規律 및 監督에 관한 일
- (다) 대아이타通信課
- 다만, 대아이타通信에 関한 것에 限한다.
- (1) 有線電氣通信法의 施行에 관한 일(技術 基準에 関한 것을 除外함)
- (2) 公衆電氣通信法의 施行에 관한 일
- (3) 電信電話設備의 拡充을 위한 暫定措置에 관한 法律의 施行에 관한 일
- (4) 電氣通信의 法律 및 監督에 관한 研究 및 調査를 行하는 일
- (5) 前各号에 揭記한 外에 電氣通信의 規律 및 監督에 관한 일
- (마) 國際課
- (1) 國際電氣通信의 管理에 관한 締約의 商議 및 締結 및 國際電氣通信連合과 其他 機関과의 連絡에 관한 일
  - (2) 外國에 있사의 電氣通信事情의 研究 및 調査에 관하여, 由此 決定을 하는 일

### 3. 電波管理의 發展方向

#### 1. 電波管理의 意義

##### (1) 電波의 定義

電波라는 用語의 定義에 關하여는 우리 나라 電波管理法에도 明示되어 있으나, 國際法 積極主義<sup>26</sup>에 따라 國際電氣通信協約 附屬無線通信規則에 시의 規定을 確認하면 다음과 같다.

Radio Waves(Hertzian Waves) : The electro-magnetic waves of frequencies arbitrarily lower than 3,000 GHz, propagated in space without artificial guide.<sup>27</sup>

日本 電波法에 關する 電波의 定義는「人工的導波体の ない空間を 伝搬する 300万 MHZ 以下の 周波数の 电磁波」라고 規定하고 있다.<sup>28</sup> 그러나 日本의 이 定義中에 300만 MHZ와 3,000 GHZ와 같은 모든 結局同一한 周波数範圍의 制限이 되지만, 「propagated in sp-

26) 電波管理法, 第3条(電波에 關한 條約)

27) R.R. 前掲書

28) 日本 電波法 第2条(定義) 第1号

ace without artificial guide에 該當된 번역에는 若干의 暖昧性이 있다.

이것을 우리 電波管理法에서는, 「電波란 人工的의導引없이 空間을 伝播하는 3,000 GHZ보다 낮은 周波数의 電磁波」라 하였다. 「導引없이」가 아니라 「導引없는」이 옳으므로 이의 是正을 筆者が 指摘하였다니<sup>29)</sup>. 이 定義中の 後段을 아예 削除하여 「電波란 3,000 GHZ보다 낮은 周波数의 電磁波」라고 改定해 버렸다.

그러므로, 電波에 관한 우리 나라의 定義는 곧 바로 簡아야 될 것으로 본다.

### (2) 管理의 意義

管理는 「일을 맡아 다스림」<sup>30)</sup>의 뜻이므로 英語의 Management에 該當될 것 같다. 現在 電波管理局의 英名은 Radio Regulatory Office로 標記되어 있는 바, Regulatory는 「規定함」 또는 「統制함」의 뜻인 regulate에서 나온 単語인 것 같다. 英語 단말에는 몇 가지의 뜻이 共存하므로 Radio Managemental Office보다는 Radio Regulatory Office가 官府名의 印象을 풍긴다. 다만, 地方의 電波監視局을 電波監理局으로 改定<sup>31)</sup>한 것은 語句上의 矛盾感이 있다. 辞典에서 監理는 「감독하고 관리함」<sup>32)</sup>이라 풀이되어 있는 바, 監理속에는 管理가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地方局이 中央局을 감독하는 것 같이 보이기 쉽다.

此際에, 中央機構는 電波監理局으로, 地方機構는 各地方 電波監理局으로, 각각 改称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電波監理의 重要性

電波의 監理는 實로 國際法(國際電氣通信協約)<sup>33)</sup>에 源源되는 것이므로 電波管理局 全職員은 勿論이고 遷信部 本部의 高位層도 이 条約에 亨通權이 바람직하다. 特히 遷信部 予算担当者나 經濟企劃院 및 國會議員들도 電波管理局은 電話局과 같은 営業機關이 아님을 直視하여 一般會計로 轉換시키고, 充分한 予算을 割当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北傀는 1975年 合法을 仮裝하여 國際電氣通信聯合에 会員國으로서 加入한 後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間接侵略有 慢行하기에 이르렀는 바, 1979年 世界無線通信 主管府會議에서는 大韓民國이 使

29) 王志均, 電波에 關する 定義의 解釈, 大韓電波協會 会報, 1966年 第20号, pp. 17~24

30) 서울明文堂, 명문국어대사전, 1969, p. 182

31) 電波管理法, 法律 第3308号, 1980年 12月 31日, 第75條의 4를 改正함

用中인 無線通信用 國際呼出符字列 中에서 HMA~HMZ를 그들의 專用으로 넣어 갖기에 이르렀다.<sup>34)</sup>

뿐만 아니라, 北傀의 不法電波에 의한 放送 素亂에도 対備하여야 될 것이므로 国家는 安保面에서도 電波監理組織을 보다 強化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進行中인 電氣通信公社의 發足 翌後에는 郵便公社의 發足도 予期할 수 있으므로 遷信部의 最後 倉儲는 電波管理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電波監理의 重要性은 諧音不要인 所以이다.

## 2. 日本 電波監理와의 比較

### (1) 機構上の 檢討

우리 나라와 日本国의 電波監理行政의 比較 分析을 各 機構表(表3 및 表4)의 対照로 以て 試圖한 즉, 우리의 發展方向이 發見될 것 같다.

즉, 日本의 電波監理局을 標範으로 한다면, 応當히 우리 放送(有線放送도 包含함)은 文化公報部 所管에서 電波管理局으로 統合되어야 하겠고, 無線從事者の 資格検定業務(通信系列: 電波通信 및 無線設備技師(技能士))도 韓國技術検定公團에서 電波管理局으로 還元되어야 할 것이다.

通信의 〈미디어〉面이나 通信人力管理面 및 行政의 単元化에 의한 能率向上이라는 뜻에서 이런 通信行政의 復元은 하루 速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宇宙通信에 관한 中央課組織의 新設 및 電波研究所의 拡張課題만은 우리 電波管理行政의 發展의 進路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第一 時急한 것은 現在의 外局을 内局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他關係部處(文化公報部長官, 海運港灣廳長 等)와 均衡이維持되도록 電波監理의 責任者の 階級을 1級(厅長, 次官補 또는 室長)으로 格上 優待하는 일이라고 希望된다.

### (2) 人力面의 專門性 比較

電波行政은 그의 技術性으로 因하여 많은 專門家가 必要하며, 또한 이들의 合力에 의하여 推進될이 庇當하다.

日本의 郵政長官 直屬으로는 電波監理審議會(議員 5名) 및 電波技術審議會(委員 25名 以内)가 있어 諸問題을 하는 同時に 司法上의 初審에 該當하는 機能<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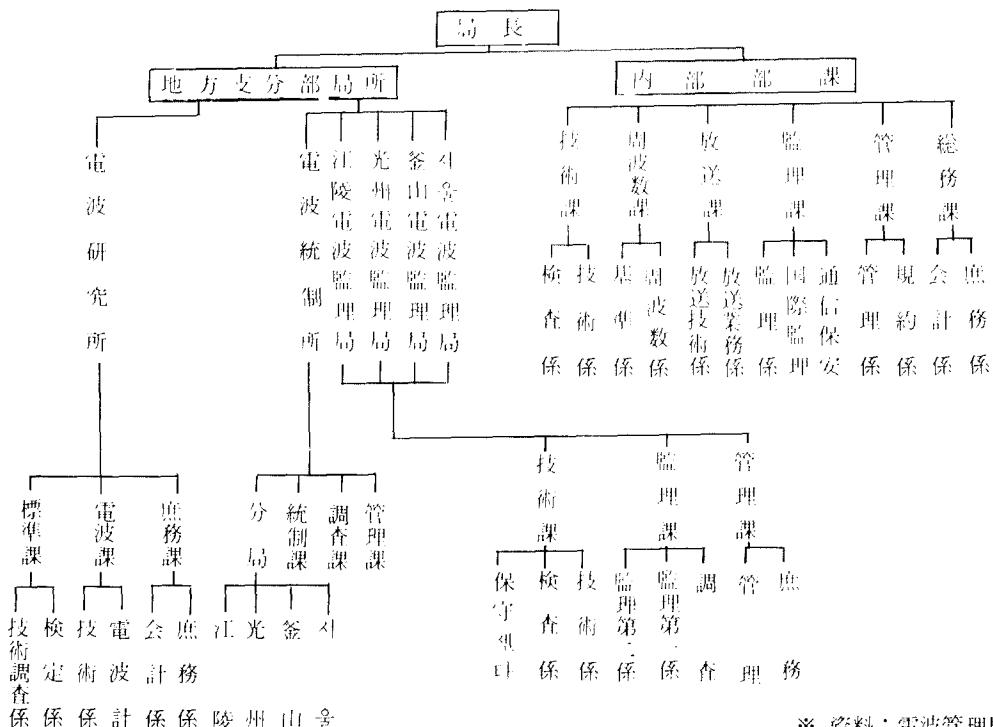
32) 명문국어대사전, 前掲書, p. 42

33) 國際電氣通信協約: 条約 第384号, 1976年 2月 9日 公布

34) 電波時報, 1980年 第1号, 前掲書, p. 25

35) 日本電波法, 第7章(異議申立て 訴訟), 同 第7章 92の (電波監理審議會)

(表3-1) 電波管理局 機構図  
(遞信部 外局)



\* 資料：電波管理局職制

까지도併有하하고 있다.

이는電波에 대한 專門性을 尊重한 까닭이다. 그 외로 電波監理局에는 많은 電波의 專門家를 위한 職責을 두고 있는 바, 이도 電波의 專門性에基因된 것이다. 즉 局長下의 審議官, 無線通信部長, 監視部長, 放送部長, 各課長, 同補佐, 調査官, 無線局検査官, 電波監視官, 検定官, 各課의 專門職, 企画調査室長, 情報処理室長, 難視聽對策室長, 伝搬障害防止係長等이 이에該當하는 바, 우리電波管理局에서도 電波의 專門性이 発揮될 수 있는 職責이 많아서 각 부 局에 차아도 本部 各課내에는 專門職 1名만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또한 각地方 電波監理局에는 各 電波監視官, 電波検査官, 電波試験官이 主任級과 平級으로 나뉘어지 있으므로<sup>36</sup> 우리나라에서도 각地方 監理局에는 電波監視官 1名뿐이라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總務處가 主管하는 公務員法 및 公務員試験令의 改正이 必須인 바, 그中인 [職群:通信] 内에 새 職列로서 通信監理官(通信上職) 및 通信研究官의 두 가지만이라도 增補하고 各階級도 1級까지 升進할 수 있도록 時急히 改定되기를 促求하여 마지막을두는 바, 外務公務員法은 改正되어 通信職列이 1級까지 升進될 수 있게 되었다<sup>37</sup>.

36) 電波時報, 1979年 3月号, 前掲書, pp. 72~73

電波組織年表: 1975. 4. 1. 地方電波監理局, 主任電波検査官, 電波検査官, 主任電波試験官, 電波試験官, 主任電波監視官及び 電波監視官を置く (以下「専門官制度」といふ,  
以下 同じ)

37) 外務公務員法: 1981. 3. 14, 法律 第3384号)

\* 第2条 第1項: 外務公務員을 다음과 같이 区分한다.

1. 外交職公務員

2. 特任公館長

3. 外務行政職公務員

4. 外信職公務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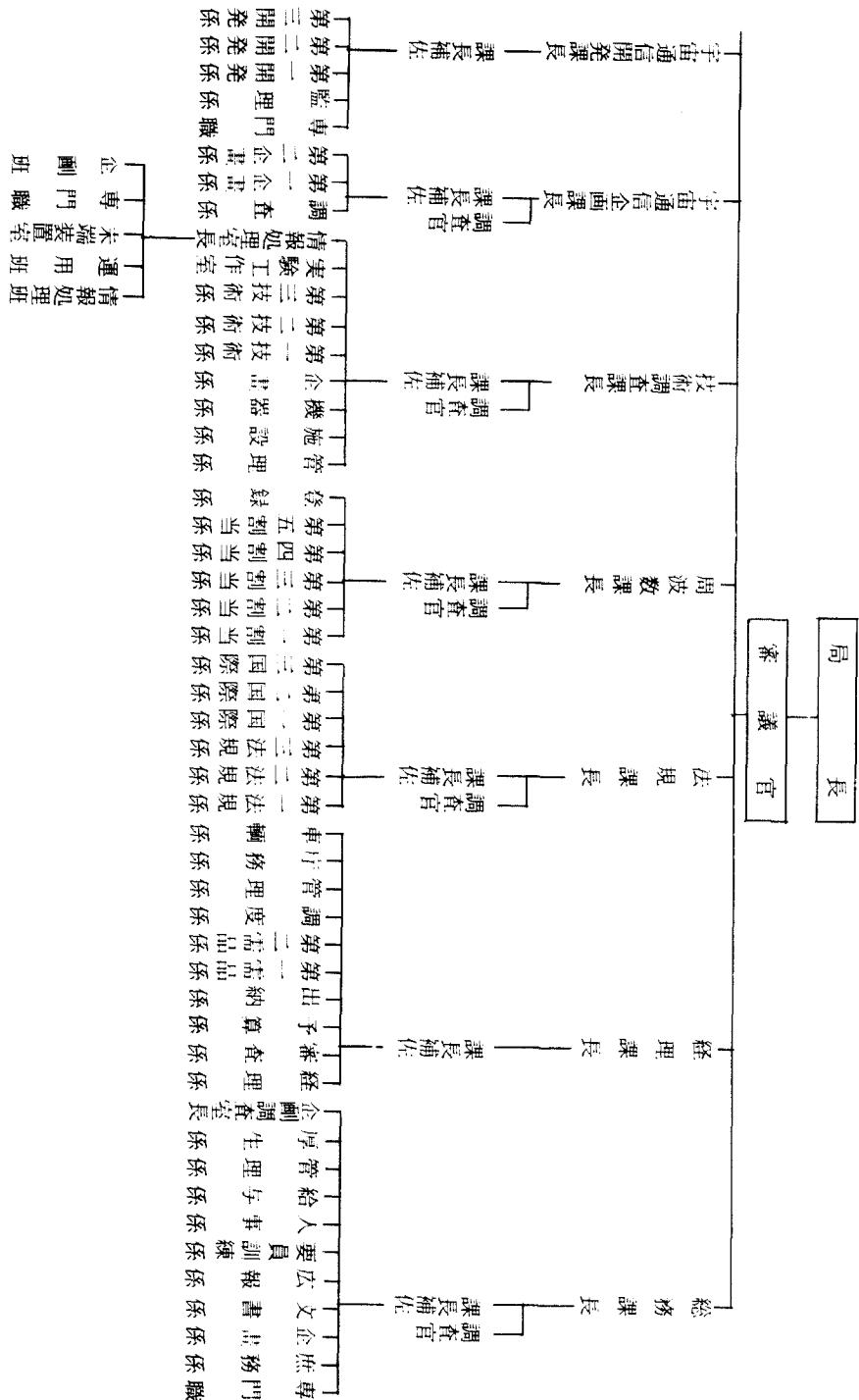
\* 第4条 第12項: 外務公務員의 階級은 다음各号와 같다.

1. 外交職公務員 特1級, 特2級, 1級 대지 5級

2. 外務行政職 및 外信職公務員 1級 대지 9級

表3-2

日本電波監理局 機構図(No.1)



\* 資料：日本郵政省組織令 同規程

表3-3

日本電波監理局 機構図(No.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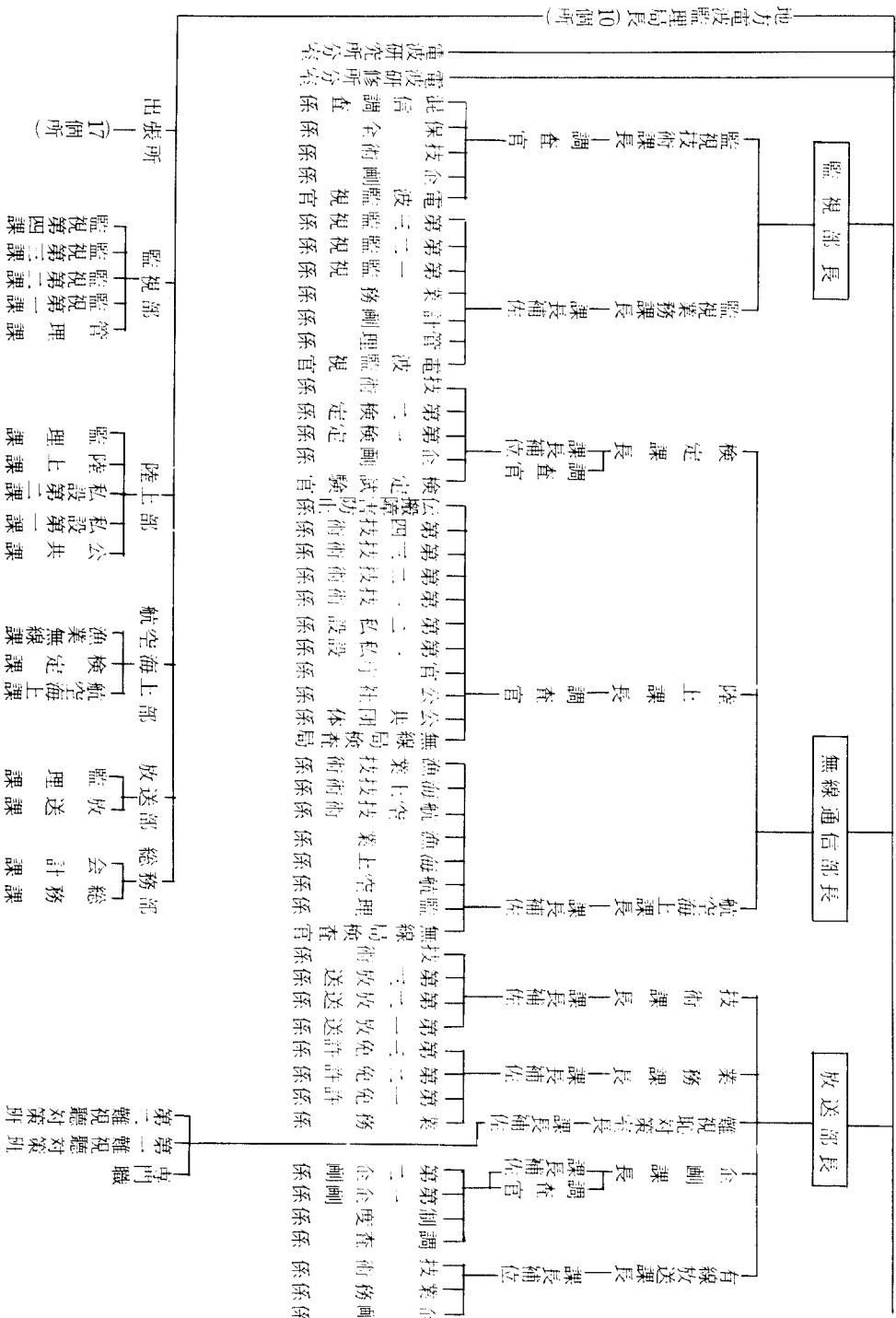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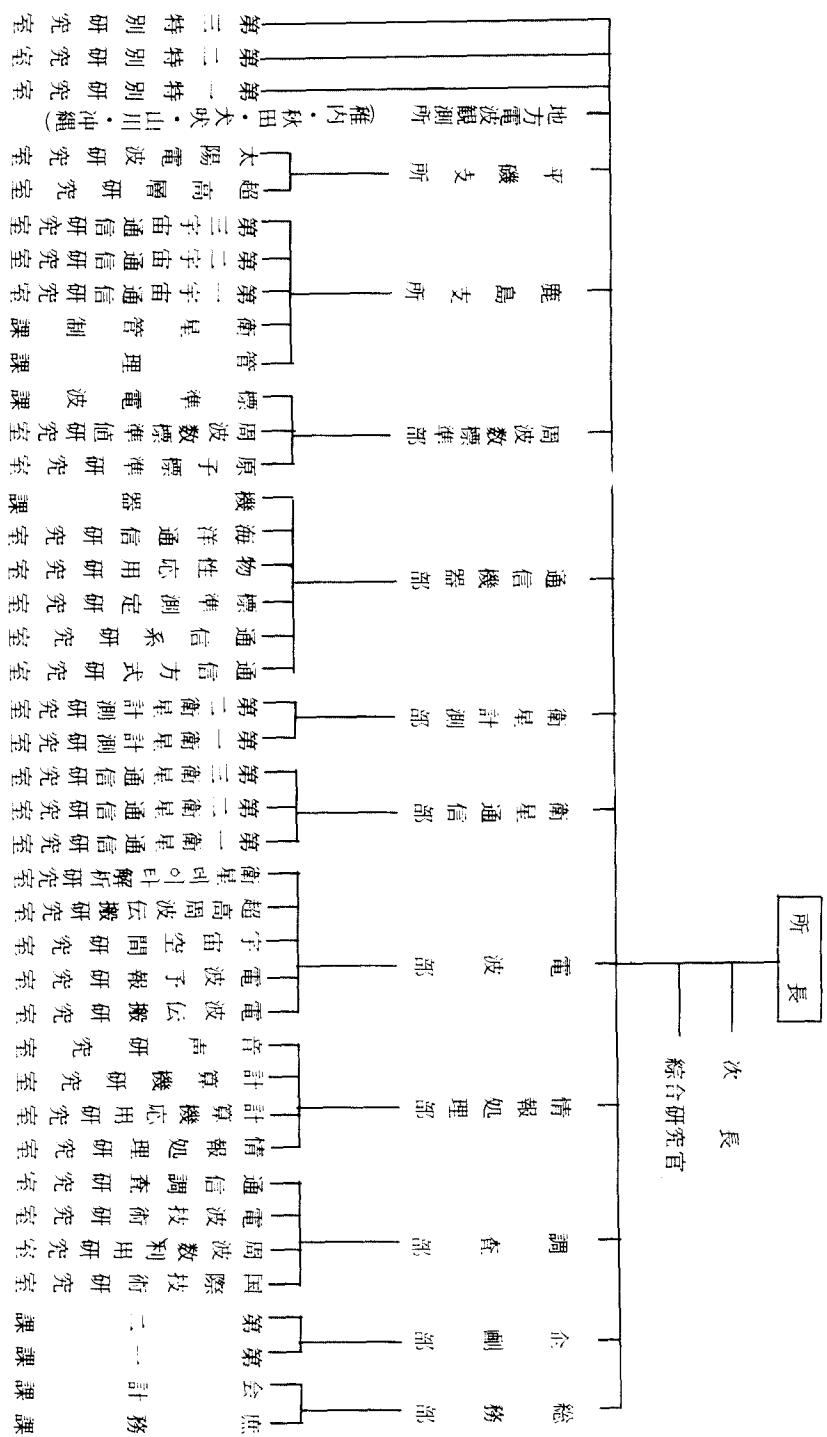


表4

日本電波研究所 機構図

(郵政省附屬機関)



(※ 資料: 電波時報, 1980. 3. p.79)

電波의 專門性이 尊重되어야 올바른 電波 行政이 될 것이며, 올바른 電波行政이 되어야만 우리 運信行政은 침화 發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맷음 말 : 또 다른 代案을 模索하마

待望의 80年代, 躍進하는 우리 第五共和國의 改革事業으로서 運信部의 中央機構가 革新되는 것은 當으로 期待되는 일이다.

公衆電氣通信事業이라는 企業을 電氣通信公社에 委任하고 運信部는 政府로서 通信의 監理權을 하게 되는 것은 行政의 主體性 確立上 當으로 進化될 일이라고 讀揚된다.

通信은 社會의 動脈일 뿐 아니라, 國民은 通信 없이는 現代社會生活을 常為 할 수 없는 故로 通信 監理行政의 中央機構 改革事業은 實로 莫重한 國家大事의 하나인 것이다.

이 聖業 对備에 資하기 위하여, 筆者는 이미 運信部의 中央機構로서 電氣通信政策局의 新設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電波管理組織의 強化 및 格上이 必要함을 主張 發表한 바 있다.

따라서, 此際에 通信人의 한 사람으로서 그 主張을 補論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여 敢히 그 發展 方向을 提示코자 하였다.

行政의 民主化는 目的의 價値이며 行政의 能率化는 手段의 價値인 바, 이의 一致가 바람직하므로 이를 위한 研究로서 先進國의 行政先例를 文獻에 의하여 追求키로 하였다.

美國의 公衆電氣通信事業은 完全民營이고 이에 對한 規制도 委員會制임에 反하여, 日本은 電信電話公社運營으로서 郵政省이 監理하고 있음이 調明 되었기, 이 研究는 主로 日本國의 該當行政을 比較資料로 捉하기로 決定하였다.

먼저, 電氣通信政策局의 發展方向을, 電氣通信과 政策의 定義 및 来歴부터 探究한 後 우리 나라 該局의 任務方向을 引出하였고 아울러 奉下 組織에 関한 日本의 實例를 調査 報告하였다.

電波管理의 發展方向도, 電波 管理의 定義부터 檢討한 後 韓國과 日本의 該局 機構表를 作成하여 比較 分析하였던 바, 放送(有線放送 包含)과 無線從事者 檢定 業務는 他部處에서 電波管理局으로 轉化됨이 바람직하며, 하루速히 宇宙通信 業務開始와 電波에 關한 研究業務 強化를 하여야 되겠다는 結果를 찾기에 이르렀다.

第一 먼저, 電波行政의 專門性이 尊重되도록 公務員

法 等이 改正되어 通信 職列속에 通信監理官 및 通信研究官을 增補함이 最時急 課題라고 論決되었다.

以上의 切実한 建議案은 〈拉斯瑩〉의 政策決定段階 中의 初環인 「情報分析」에 不過한 것인즉 〈세미나〉等에 의한 支持獲得과 代案策 및 司祭的指導者에 의한 修正補完이 期待된다. 이는 다시 feed back 理論으로서 “政策實現”, “終局”, “評価” 및 “情報分析”으로 模索 發展되어야 하겠다.

마지막 小見이 우리 나라 通信行政의 發展 促進에 寄与될 것으로 믿어진다.

#### 参考文獻

1. 제1回形質, 제1부, 1977
2. 국제기동통신협약(조약 제564호), 1976. 2. 9. 國連 제7267호
3. 前項外, 新六法, 民衆書館, 서울, 1968.
4. 金桂善, 法學通論, 賢友文化社, 서울, 1960.
5. 朴觀淑, 新版 國際法, 法文社, 서울, 1976.
6. 新井隆一外, 行政法, 有斐閣, 東京, 1980.
7. 電波法令集, 電波振興会, 東京, 1981.
8. 通信白書, 郵政省, 東京, 1980.
9. F. HEADY, 徐元宇 訳, 比較行政論, 法文社, 서울, 1976.
10. 前項外, 政策學概論, 法文社, 서울, 1980.
11. 便覽 郵政省, 株式公社 教育社, 東京, 1979.
12. 三浦一郎, 通信政策の課題と展望, 第一法規出版株式会社, 東京, 1974.
13. 電氣通信八十年史, 運信部, 1966.
14. 明治末이대사전, 서울明文堂, 1969.
15. 金椿澤, 通信事業經營概論, 韓國電氣通信產業研究所, 서울, 1975.
16. 金忠烈, 國際郵便概要, 尚玄文化社, 서울, 1966.
17. 丘志均, 電波管理法講義, 海綠社, 서울, 1974.
18. 月刊, 電信電話研究, 1976~1981, 韓國電氣通信產業研究所, 서울.
19. 電波時報, 1976~1981, 電波振興会, 東京
20. 國際電信電話, 1976~1981, 國際通信文化協會, 東京.
21. FRED W.RIGGS, 朴東緒 外 訳, 新生國行政論, 大韓教科書株式会社, 서울, 1975.



王志均(Jee Kyoon WANG)　正会員

1923年7月25日生

1945年8月：舊・官立蔚州無線電信講習所卒業

1977年2月：建国大學校行政大學院 行政學科(通信行政専攻)修了

1950年~1945年：交通部技術監督課 鐵道通信

1951年~1959年：大韓海運公社等 通航主管

1960年~現在：光云工科大學教授, 同大學附設通信科學研究所所長, 本学会常任理事